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983
----------	-------

발의연월일 : 2025. 8. 5.

발 의 자 : 문진석 · 김문수 · 이재관
한정애 · 강준현 · 윤종균
박용갑 · 이연희 · 조인철
서영석 · 정준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의무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황

단보도의 신호기, 속도 제한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 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 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 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u> 1. <u>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u> 2. <u>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u>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u>방지하기 위한 시설</u> <u>4. 방호울타리</u> <u>5. 그 밖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u>
--	--